'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제2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2조 원산지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9조 세트상품

제10조 중립재

제11조 재료 구분 회계

제3부 영역 요건

제12조 영역 원칙

제13조 직접 운송

제2절원산지절차

제4부 환급 또는 면제

제14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 요건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제17조 인증수출자

제18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제19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제20조 분할 수입

제21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제22조 증빙 서류

제23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제6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26조 주소의 교환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제28조 분쟁해결

제29조 벌칙

제30조 자유지역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7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제32조 특별 조건

제 4 절

최종규정

제8부 최종규정

제33조 의정서의 개정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공동 선언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선언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선언 이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제1절원산지규정

제 1 부 일반규정

> 제 1 조 정의

-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 다. **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 라.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마.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바.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 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 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

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 자.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 차. **분류된**이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 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그 일반해석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제 2 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 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 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 1.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 나. 당사자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 다.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 마. 1) 당사자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당사자의 내수 또 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 2) 당사자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 바.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 물 및 그 밖의 제품
 -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 아. 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 자.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차. 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제품
- 2. 제1항 바호 및 사호에서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 하는 것, 그리고
 -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 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 그리고
 -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 가 소유되는 회사

제 5 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 3. 제2항은 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 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 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 함한다)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 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 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 더. 동물의 도살
-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 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 9 조 세트상품

HS 통칙 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모든 구성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트와 그 제품 모두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중 립 재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재료 구분 회계

-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

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 부 영역 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3 조 직접 운송

-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 류, 또는
 -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제2절원산지절차

제 4 부 환급 또는 면제

제 14 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에 관해 이용 가능한 정보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를 상호적으로 교환한다.
 - 1.1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HS 2007 하의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분류된 재료의 수입에 대한 8단위/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 통계와,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수출 통계가 제공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계는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제공된다. 이 조의 제3항을 근거로 도입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 정보가 교환된다.
-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협정의 발효 이후의 원자재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대한 가능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1 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될 것이다.
 - 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당사자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재료의 관세부과대상 수입의 증가율이, 그 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

자의 제품의 국내소비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 한다는 것
-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또 는
-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그 당사자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 나.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그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 자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 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경쟁의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련된 증거도 고려된다.1)
- 3.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제14장(분쟁해결) 제14.5조(중재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해 긴급사건의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패널이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당사자는 판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최대 관세율을 5퍼센트로 제한한다.

¹⁾ 이 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평가하는 목적상, 기준년도는 이 협정의 발효 직전 최근 3년의 평균일 것이며, 각 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 연도이다. 증거는 해당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된 모든 재료의 총합이나 그러한 재료의 하부집합에 근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세 환급과역내 가공에 대한 제한은 그 하부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다.

²⁾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기 전에는 제2항에 예견된 협의 외의 어떠한 추가 협의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예견된 협의의 기한은 제14.3조제4항의 기한과 같다.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위한 기한은 제14.7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다.

제 5 부 원산지 증명

제 15 조 일반 요건

-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 16 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 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

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 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 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 17 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

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 18 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수리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외에 서류의 제출이 늦은 경우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수리할 수 있다.

제 19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 **21** 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 4.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품장이 발부될 경우,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자의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다.

제 22 조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 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 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 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 23 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 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 3.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4**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25 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 1.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 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 출된다.
-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

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항에 규정된 연례 조정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으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자국통화 상당액은 환산되지 아니한 채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 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수행될 때, 관세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관련 한도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 적상, 관세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 26 조 주소의 교환

양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유럽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7** 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

- 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 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제 28 조 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

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 29 조

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 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 30 조 자유지역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 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신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증명 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의 규정과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 제 7 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 31 조 의정서의 적용

- 1. "유럽연합 당사자"용어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로 수입된 경우, 스페인왕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법률의 의정서 2에 따라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관세 체제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며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로부터 수입되었고 이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관세 체제를 부여한다.

3.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할 목 적상, 이 의정서는 제32조에 규정된 특별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32 조

특별 조건

- 1. 제품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운송된 경우 다음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 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 1)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 2) 1)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 쳤을 것, 또는
 - 나) 그 제품이 당사자를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 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 나.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 1) 대한민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 2) 1)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대한민국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 쳤을 것, 또는
 - 나) 그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 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 2. 세우타 및 멜리야는 단일 영역으로 간주된다.

- 3.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대한민국" 또는 "세우 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 신고서에 기입한다.
- 4. 스페인 관세당국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의 이 의정서의 적용을 담당한다.

제 4 절 최종규정

제 8 부 최종규정

제 33 조 의정서의 개정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하게 작업되거나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제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사용된 소호 번호, 호 번호 또는 류 번호를 제시하고 제2열은 그 소호, 호 또는 류에 대하여 그 체계에서 사용된 상품명을 제시한다. 처음 두 열의 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명시된다. 일부 사례에서,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되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에서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 여러 개의 소호 또는 호 번호가 제1열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 가 제시되어, 제2열의 상품명이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에서 류의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되거나 제1열에서 함께 그룹화된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 2.3. 하나의 소호 또는 호 내의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목록에 있는 경우, 각각의 들여쓰기 한 곳은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호 또는 호의 그 일부에 대한 상품명을 포함한다.

2.4.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과 제4열 모두에 명시되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에 명시된 규정 또는 제4열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열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이 의정서의 제5조의 규정은, 이 원산지 지위가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장안에서 또는 당사자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

결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하는 제8407호의 엔진은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제7224.10소호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재료가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비원산지 괴로부터 가공되었을 경우, 그 재료는 목록의 제7224.90소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 재료는 엔진의 가치 산정시, 그 재료가 동일한 공장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 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 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합산 할 때 비원산지 괴의 가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2.목록의 규정은 요구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더 적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의 특정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 늦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 단, 그 어떠한 특정 제한이라도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제시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의 것을 제외한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모든 재료가 사용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제5208호에서 제5212호까지의 직물에 대한 규정은 천연섬유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재료 중에서 화학재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가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나 나머지 하나, 또는 둘 다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5.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직물에 관한 아래 주석 6.2 참조).

예:

곡물과 그 파생품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제1904호의 조제식품에 대한 규정은 곡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닌 천연소금,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목록에 명시된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ᆀ:

ex 제62류 중 부직포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의류 물품의 경우, 오직 비원 산지 사만의 사용이 이런 종류의 물품에 허용되는 경우, 부직포 옷감이 통상 적으로 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부직포 옷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 시작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사 이전 의 단계인 섬유 단계이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두 개의 비율이 제시되는 경우, 이들 비율은 합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는 제시된 비율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별 비율은 그 개별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에 대하여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석 4:

- 4.1.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 4.2.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제0503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 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 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 4.3. "방직용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된다.
- 4.4. "인조스테이플섬유"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 할 때 목록에서 사용된다.

주석 5:

-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의 주석 5.3 및 5.4도 참조).
- 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허용치는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

- 경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 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 제5605호의 기타 제품

a]]: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5112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 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a||: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5.3.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퍼센트이다.

5.4.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

하여 목록의 제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 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 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ᆀ: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 어야 한다.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히 수행된 작업	
(1)	(2)	(3) 또는	= (4)
제 1 류	산 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 전 획득되어야 함.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제 3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 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 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 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 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 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제 5 류	다른 류에 포함되거나 분 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 산품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 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해야함.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사용된 제8류의 모든 과실 및 견과류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1)	(2)	(3) 또는	(4)
ex 제9류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및 커피를 함유(비 율불문)한 커피대용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 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0902.10	녹차(발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내용량이 3킬로 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910.91	혼합 향신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0류	곡 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 류, 제11류, 그리고 제23류 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1106.10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 의 분·조분과 분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 물, 짚과 사료용 식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301	락과 천연검, 수지, 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삼)	사용된 제1301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 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 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 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음을 제외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생산	
1302.19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중 의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211.20호의 것 은 제외	

(1)	(2)	(3) 또는	= (4)
1302.31 1302.32, 및 1302.39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 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501	다음을 제외함. 돈지(라드를 포함한다) 와 가금지(제0209호 또 는 제1503호의 것은 제 외한다)	제0203호 또는 제0206호 의 돼지의 육 또는 식용 설육, 또는 제0207호의 가 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 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1502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 료와 제0506호의 뼈는 완 전 획득되는 생산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 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 린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 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7부터 ex1515까지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 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509 및 1510	올리브 기름과 그 분획 물, 오로지 올리브로부 터만 획득한 그 밖의 기 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2류의 것 은 제외	

(1)	(2)	(3) 또는 (4)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 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 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 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 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 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 10류, 제15류 및 제23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및 제1513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있음.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 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 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 분획 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 다)	사용된 제2류와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 10류, 제15류 및 제23류 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 러나 제1507호와 제1508 호, 제1511호 및 제1513 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추동물의 조제품	제1류의 동물로부터의 생 산, 그리고/또는 -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701.9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이며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및 캐러멜당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 아당 및 과당	제1702호의 그 밖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 기타의 당류(고체상태 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기타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 지 재료인 생산	
ex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긴 것에 한 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렛 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함. 	

(1)	(2)	(3) 또는 (4)
1901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 스의 조제식료품(코코 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40퍼센트 미만인 것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부터 제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 품의 조제식료품(코코 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5퍼센트 미만인 것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하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ex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며, 스파게 티, 마카로니, 누들, 라 사그네, 그노치, 레비오 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 우스쿠우스(조제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은 완전 획득되는 생산(다만, 듀럼밀과 그 부산물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든 재료가 그 제품 중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들은 완전 획득되어야함.
ex 1902.19	국수(조리되지 않고 건 조된, 속을 채우지 않 은, 분으로부터 획득된 것을 말한다. 듀럼밀 새 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다)	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1902.30	라면(인스턴트 국수, 열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되고, 고추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베이스를 포함한 혼합조미료와 함께 포장된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 (4)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 물(프레이크상, 낟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 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제외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식품류(예: 콘플레 이크)와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 수는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 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806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0류와 제11 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 (다만, 듀럼밀과 경립종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ex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유사한 물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1류의 것은 제 외	
ex 1905.90	미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 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7류와 제8류 및 제 12류의 모든 과실, 견과류, 채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2006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 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 탕에 절인 것)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2007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 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인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2008.11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중의 낙화생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2008.19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중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사용된 제0801호와 제0802호 및 제1202호부터 제1207호까지의 모든 원산지 견과류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생산	
2008.91 2008.92 吳 2008.99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중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 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 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 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첨가한 것 을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음 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 합조미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겨자의 분준 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용될 수 있음.	

(1)	(2)	(3) 또는	. (4)
2103.30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 한 겨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3.90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4.10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 드용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002부터 제2005호까지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류는 제외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 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 지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 제식료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 은 제외	
		- 사용된 제1211.20호 및 제 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 고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 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것 은 제외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 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1)	(2)	(3) 또는	(4)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 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 함한다) 및 그 밖의 알 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주스는 제 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함. - 사용된 제2009호의 모 든 과일 주스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함. 다만, 파인애플,라임 또는 자 몽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211.20호와 제1302.19호의 모든 재	(-)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 알코올(알코올의 용량 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 다) 및 변성에틸알코올 과 기타 변성주정(알코 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207호 또 는 제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 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 알코올(알코올의 용량 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정한 다), 증류주, 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207호 또 는 제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 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ex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다음을 제외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2301	고래 조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완 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올	
2306.90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 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 인지를 불문하며, 제 2304호 또는 제2305호 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 는것에 한정한다)의기타	리브는 완전 획득되는 생 산	
2309	사료용 조제품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 류, 제10류, 제11류 및 제 17류의 모든 재료가 원산 지 재료인 생산	

(1)	(2)	(3) 또는	- (4)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 용물.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 배 또는 담배부산물의 중 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 산지재료인 생산	
2403.10	흡연용 담배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 배 또는 담배 부산물의 중 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 산지재료인 생산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 고, 석회와 시멘트. 다 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2504.10	천연흑연(분상 또는 플 레이크상인 것에 한정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5.12	대리석, 트레버틴, [톱 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 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6.12	한정한다] 화강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것에 한정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8.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 석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2519	파쇄된 천연 탄산마그 네슘(마그네사이트)(완 전밀폐용기에 담긴 것 에 한정한다)과 산화마 그네슘(순수한 것인지 를 불문한다)을 포함하 고 용융마그네시아, 소 결한 마그네시아를 제 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천연 탄산마그네 슘(마그네사이트)는 사용 될 수 있음.	
ex 2520.20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한정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525.20	운모분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 의 분쇄	
ex 2530.90	어드칼라(하소한 것 또 는 분말화한 것에 한정 한다)	어드칼라의 하소 또는 분 쇄	

(1)	(2)	(3) 또는	= (4)
제26류	광, 슬랙 및 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 질 및 광물성 왁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 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 기 또는 무기화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29류	유기화학품. 다음을 제 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2905.19	메탈알콜레이트(이 호 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 올의 것)	제2905호의 다른 재료들을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이호의 메탈 알코올레이트의 총 가치가 이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 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 로겐화유도체, 술폰화 유도체, 니트로화유도 체 또는 니트로소화유 도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15호와 제2916호의 모 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2932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 겐화유도체, 술폰화유 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09호의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환식아세탈과 내연해 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 화유도체,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933	질소헤테로원자로만 이 루어진 헤테로고리 화 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의 모 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를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 및 제 2934호의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1)	(2)	(3) 또	는 (4)
ex 제30류	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사용될수 있음.	
3001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기 관(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 한다) 선, 기타기관, 또는 그 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 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 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 류되지 아니하는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3002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 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1류	비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	는 (4)
ex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 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 유하는 것), 그 밖의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다음을 제외함. - 질산나트륨 - 칼슘시아나미드 - 황산칼륨 - 황산마그네슘칼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다만, 그 제품 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 안료 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다만, 그 제품 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 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 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201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 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 품(이 류의 주 3에 규정 한 것에 한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 및 합 성유기루미노퍼(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 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3)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203호, 제 3204호 및 제3205호의 것 은 제외. 그러나 제 3205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제3203호, 제3204호 또 는 제3205호에 해당하 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 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 로 사용되는 무기물(화 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음 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³⁾ 제32류에 관한 주해3은 이러한 조제품이, 제32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른 재료의 안료로 쓰이거나 안료 조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종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1)	(2)	(3) 또는	= (4)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 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 레오레진; 정유의 농축 물(냉흡수법 또는 온침 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 로서 유지, 불휘발성유,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 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 유의 애큐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큐어스 宫 루션	이 호의 다른 "군"4)의 재 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 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품과 같은 "군"의 재료 는 그 총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 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 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과 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 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파라핀, 석유왁스, 역 청왁스, 슬랙왁스 또는 스케일왁스를 기제로 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ex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 분, 글루 및 효소. 다음 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4) &}quot;군"은 세미콜론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호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1)	(2)	(3) 또는	= (4)
3505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 전분(예:프리젤라티나 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 테르화 전분) 및 전분, 텍스트린 또는 기타 변 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 루		
	- 전분 에테르 및 에스 테르	제3505호의 그 밖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507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 연성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면상 사진필름(감광 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하며, 지 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 는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 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팩으로 된, 천연색 사 진용의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그 러나, 제 3702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 료는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그 러나, 제3701호와 제3702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와 제3702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704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화지,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것은 제 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03.00	정제한 토올오일	조상 토올 오일의 정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ex 3805.10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황산테레빈원유의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한 정화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3806.30	에스테르검	수지산으로부터의 생산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8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 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 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 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 지, 양초 및 파리잡이 끈 끈이)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9	완성가공제, 염색촉진 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 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 지조제품, 납붙임·땜 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 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 접용의 분말과 페이스 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 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 하는 조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1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 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 솔린을 포함한다)용 또 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 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 체용의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 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 용 복합가소제(따로 분 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만 해당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 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 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는 것에 한한다) 및 조 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 는 바니쉬 제거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 학원소(디스크상, 웨이 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 학화합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9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 제유압전동액(석유 또 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미만 인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 빙액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21.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다), 식물, 인간 또는 동 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2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 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 실용 시약 (뒷편을 보강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하며, 제3002호 또는 제 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 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 용 지방성 알콜		
3823.11부터 3823.19까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콜	제3823호의 그 밖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 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 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 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 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 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901부터 3921까지	플라스틱(일차제품, 웨 이스트, 페어링인 것에 한한다)과 플라스틱 부 스러기, 플라스틱 반제 품과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3907.30 및 3907.40	에폭시수지 및 폴리카 보네이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907.20 및 3907.91	기타 폴리에테르 및 기 타 폴리에스테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922부터 3926까지	플라스틱 물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 고무(일차제품, 판, 쉬 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천연 고무는 제외)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생산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 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타이 어트래드 및 타이어플 랩	
ex 4012.11, ex 4012.12, ex 4012.13 및 ex 4012.19	- 고무제의 재생 공기타 이어 (솔리드 또는 쿠 션타이어에 한한다)	중고타이어의 재생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011호, 제 4012호의 것은 제외
ex 4017	경질고무 제품	경질고무로부터의 생산
ex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 와 가죽. 다음을 제외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4102.21 및 4102.29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 피(탈모한 것에 한한다)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 를 제거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4104부터 4106까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 트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유연처리한 가죽의 재유 연처리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 구, 핸드백 및 이와 유 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 트(누에의 거트는 제외 한다)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 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4302.30	유연처리 또는 완성가 공한 모피(조합한 것에 한한다)	
	- 판, 크로스 및 유사형 상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 되거나 완성 가공된 모피 의 조합 및 절단에 추가한 표백 또는 염색
	- 기타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 되거나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로부터의 생산
4303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 품	제4302호의 조합되지 않 은 유연 처리되거나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로부터 의 생산
ex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 탄.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 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 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 조인트한 것
ex 4408	베니어용 단판(적충목 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 함한다), 두께가 6밀리 미터 이하인 합판용 단 판(이어붙인 것), 기타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 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 터 이하인 것에 한하 며,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 한다)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 판용 스트립과 프리즈 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 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 적으로 성형한 것(블록 가공, 홈가공, 은촉이음 가공, 경사이음가공, 브 이형이음가공, 구슬형 가공, 주형가공, 원형가 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 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 질, 연마, 엔드-조인트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또는 (4)	
ex 4410 부터 ex 4413까지	구슬형가공품·주형가 공품(주형가공된 스커 팅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 공	
ex 4415.10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의 생산	
ex 4416.00	목제의 통, 배릴, 배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 들의 부분품	쪼갠 막대로부터의 생산 (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 상의 가공이 안 된 것에 한한다)	
ex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 공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셀 룰라우드패널과 지붕 이 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 음.	
	-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 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 가공	
ex 4421.90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 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모든 호의 나무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9호의 인발한 나무는 제외	
ex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다음 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제 45 01호의 코르크로부 터의 생산	
제46류	교, 에스파르토 또는 기 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 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 이스트와 스크랩)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ex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 프, 지 또는 판지의 제 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기 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 (제4809호의 것은 제외 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 (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제47류의 제지원료로부 터의 생산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봉함엽서, 우편엽서, 통 신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 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4818.10	화장지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 터의 생산
ex 4820.10	편지지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49류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 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 면.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 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안내용의 것으 로서 그림, 봉투, 장식 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909호와 제4911호의 것은 제외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ex 5003	카드 또는 코움한 견웨 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 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 아넷스톡을 포함한다)	견웨이스트의 카드 또는 코움
5004 부터 ex 5006까지	견사, 견방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펼 프 또는 - 제지 원료

⁵⁾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 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6)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7)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1류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 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⁶⁾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106부터 5110까지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 모사 또는 마모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 제지 원료

⁸⁾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111부터 5113까지	직물(양모, 섬수모, 조 수모 또는 마모)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9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0)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⁹⁾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1) 5204부터 5207까지	면의 사 및 실	(3) 또는 (4)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¹¹)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¹¹⁾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1) 5208부터 5212까지	면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단사로부터의 생산12)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3)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 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¹²⁾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306부터 5308까지	기타 식물성 섬유사 및 지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녀)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펼프 또는 - 제지 원료

¹⁴⁾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309부터 5311까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 물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15)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6)
		- 코이어사
		- 황마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¹⁵⁾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 5406까지 *** 이 모드 필라멘트와 인조필라멘트사 *** 이 방식 또는 전웨이스트 (카드, 코용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천연섭유(카드, 코용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화학제료 또는 방식용 필프 또는 *** - 체지 원료	(1)	(2)	(3) 또는	(4)
	5401부터	사 및 모노필라멘트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7)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4)

¹⁷⁾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u> </u>
5407 및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18)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9)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¹⁸⁾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501부터 5507 까지	인조 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로부터의 생산
5508부터 5511까지	인조 스테이플 섬유사 와 재봉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0)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 제지 원료

²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512부터 5516까지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21)
	- 고구사들 봉근 것 - 기타	단사도구터의 생산22)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펼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²¹⁾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ex 제56류	워딩, 펠트 및 부직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3)	
	특수사, 끈, 코디지, 로 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 코이어사	
	세품, 나름을 세외함.	- 천연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2	펠트(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니들룸펠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4)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 렌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 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 렌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 품의 공장도 가의 4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²³⁾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5) - 천연섬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 스테이플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 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 한다)	室 正
5604.10	-고무사와 코오드(방직 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고무사와 코오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의 생산
5604.90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6)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펼프. 또는, - 제지 원료

²⁵⁾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605	금속드리사(짐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호 또는 제5405호 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사, 스트 립, 분상으로 금속과 결 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 복한 것만 해당한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7)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 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 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8)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필프, 또는 - 제지 원료

²⁷⁾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 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니들룸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9)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 렌 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 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 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 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 용될 수 있음.
	- 기타 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0)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1)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 트사
		- 천연섬유, 또는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 용될 수 있음.

²⁹⁾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³¹⁾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ex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 유직물, 레이스, 태피스 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다음을 제외함.		
	- 고무사와 결합한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32)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3)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 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 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5805	고우벌린직, 플란더스 직, 오버션직, 뷰바이스 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 의 태피스트리(예:퍼티 포인트, 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 트리(제품으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³²⁾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5810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 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 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 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 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사로부터의 생산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 데르 및 비스코스레이 온의 것만 해당한다)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하를 함유	사로부터의 생산
	-기타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펼 프로부터의 생산
5903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 용 섬유의 직물류(제	사로부터의 생산
	용 점규의 식물ㅠ(제 5902호에 해당하는 직 물류는 제외한다)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 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 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 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로부터의 생산34)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 복재	
	-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 포, 피복 또는 적충	사로부터의 생산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5)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³⁴⁾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1)	(2)	(3) 또는 (4)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 는 제외한다)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6)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펼프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 퍼센트 초과 함유한 합 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 진기타 직물	화학재료로부터의 생산
	- 기타	사로부터의 생산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	사로부터의 생산,
	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 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	또는
	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³⁶⁾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한다.

(1)	(2)	(3) 또는	(4)
5908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 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 (직조, 편조 또는 편직 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 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로 부터의 생산	
	- 기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5909부터 5911까지	섬유제품(공업용에 적 합한 종류의 것)		
	- 제5911호의 펠트의 것 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녕마로부터의 생산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일반적으	- 코이어사로부터의 생 산37)	
	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펠트된 것과 아닌 것을 포함하며 침투 또	- 다음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는 도포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 편직 및/또는 웨프트를	폴리테트라 플루오르 에틸렌의 사38)	
	자장한 관형 또는 순환 형, 또는 제5911호의 복 수의 경사 및/또는 웨 프트를 자장한 평 직물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 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 드의 복합사에 한한다)	
	에 한한다)	사(방향족 폴리아미드 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	
		으로 메타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 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한 한다)	
		<u> </u>	

³⁷⁾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8)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1)	(2)	(3) 또는	(4)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 틸렌의 모노필39)	
		합성방직섬유제의 사 [폴리(파라-페닐렌 테레 프탈아마이드)의 것에 한 한다]	
		유리 섬유의 사(페놀 수 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 사로 짐프된 것에 한한 다) ⁴⁰⁾	
		폴리에스테르 코폴리 에스터르 모노필라멘트 와 테레프탈산, 1.4-시클 로헥산디탄올산 및 이소 프탈산의 수지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 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1)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 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³⁹⁾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⁴⁰⁾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⁴¹⁾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2)	(3) 또는 (4)
제60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개질 편물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2)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뜨개질(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스테이플섬유 및/또는 인조스테이플섬유의 방적43)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 또는 연조 필라멘트사의 압출 또는 편직 및 절단을 포함한 제조 (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 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된 편직 또는 크로셋 직물 두 조각 이상의 조립)44)45)

⁴²⁾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⁴³⁾ 소개주석5를 참조

⁴⁴⁾ 소개주석5를 참조 45)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다음을 제외함.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46/47)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자수.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직물 의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49)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도포,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직물 의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49)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며 구성보다 선행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50)51)

⁴⁶⁾ 소개주석5를 참조

⁴⁷⁾ 소개주석6을 참조

⁴⁸⁾ 소개주석6을 참조

⁴⁹⁾ 소개주석6를 참조

⁵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⁵¹⁾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4)
ex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 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 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호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재단된 칼라, 커프스의 심감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ex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 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 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 은 제외	
6301부터 6304까지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및 베드린넨 등, 커튼 등,기타가구제품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2)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기타		
	자수한 것	-표백하지 않은 단사53)54)로부 터의 생산, 또는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 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자 수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기타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55)56)	

⁵²⁾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⁵³⁾ 소개주석 6을 참조

⁵⁴⁾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을 참고

⁵⁵⁾ 소개주석 6을 참조

⁵⁶⁾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6을 참고

(1)	(2)	(3) 또는	= (4)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7)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6306	타포린, 천막, 차양, 덴트, 돛 및 캠프용품		
	- 부직포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58)59)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6307	- 기타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60)61)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6308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 정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 나, 비원산지 물품의 총 가 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 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세 트에 사용될 수 있음.	
ex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 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 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⁵⁷⁾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⁵⁸⁾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⁵⁹⁾ 소개주석6을 참조

⁶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⁶¹⁾ 소개주석6을 참조

(1)	(2)	(3) 또는	= (4)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 깥바닥을 제외한 바닥 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를 포함 한다], 갈아 끼울 수 있 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 와 유사한 물품, 각반,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 품과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6505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 개질의 것과 원단상(스 트립상의 것은 제외한 다)의 레이스, 펠트, 또 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 의 직물류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 종 재료제의 헤어네트 (안을 댄 것 또는 장식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 의 생산62)	
ex 제 66 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 틱, 채찍 및 이들의 부 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 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67 류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와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제 68 류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다 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6803.00	슬레이트 또는 응결 슬 레이트 제품	가공된 슬레이트로부터 의 생산	

(1)	(2)	(3) 또는 (4)
ex 6812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 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 과 탄산마그네슘을 기 제로 한 혼합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6814	운모 제품(응결 또는 재 생운모를 포함하며, 지,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된 것)	가공된 운모로부터의 생 산(응결 또는 재생된 운 모를 포함한다)
제 69 류	도자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다음 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006	제7003호,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유전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SEMII 기 준63)에 따른 반도체 등 급의 유리판 토대	제7006호의 코팅되지 않 은 유리판 토대로부터의 생산
	-기타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 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008	유리제의 복충절연유 니트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 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1)	(2)	(3) 또는 (4)
7010	유리제의 카보이, 병 플라스크, 단지항아리, 약병, 앰플 및 기타 이와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및 유리제의 마개, 뚜껑및 기타 마개류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7013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 사무용, 실내 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또는 손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 제품의 수공 장식(실크스 크린 프린팅 제외), 사용 된 손으로 불어서 만든 유 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 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1)	(2)	(3) 또는	= (4)
ex 7019	유리섬유 제품(유리사 제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 버,로빙,실,또는 단연사 또는 - 글라스 울	
ex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 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 변장식용품과 주화. 다 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 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 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02, 7103 吳 7104	다이아몬드, 기타 귀석 및 반귀석 (천연, 합성 또는 재생된 것)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의 생산,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106, 7108 및 7110	귀금속 - 가공하지 아니한 것 - 기공하지 아니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106, 7108 호및 제7110호의 것은 제 외 또는 제7106, 7108 호 또는 제 7110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호 귀금속의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가공하지 아니한 귀금속 으로부터의 생산	

(1)	(2)	(3) 또는 (4)
7107, 7109 및 7111	귀금속을 입힌 금속(일 차제품보다 더 가공하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 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부 분품으로부터의 생산. 다 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72 류	철강.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207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7205호 또는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208부터 7216까지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제7206호 또는 제7207호 의 잉곳, 다른 일차 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의 생산
7217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선	제7207호의 반제품 재료 로부터의 생산
7218.91 및 7218.99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호 또는 7205호 또는 제 7218.10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219부터 7222까지	스테인리스 강의 평판 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제7218호의 잉곳, 다른 일 차형상 또는 반제품재료 로부터의 생산
7223	스테인리스 강의 선	제7218호의 반제품재료 로부터의 생산
7224.90	반제품	제7201, 7202, 7203, 7204, 7205호 또는 제7224.10호 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또는 (4)
7225 부터 7228까지	비규칙적으로 감긴 고 리형태의 평판압 제품, 열압 바 및 대 기타 합 금 강철의 봉, 형재 및 조각 강철의 합금 또는 비합금 공동 드릴 바 및 대	제7206, 7207, 7218호 또 는 제7224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 로부터의 생산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제7224호 반제품 재료로 부터의 생산
ex 제 73 류	철강의 제품. 다음을 제 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301.10	강시판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 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궤조, 책궤조와 치형궤 조, 첨단궤조, 교차구 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 싱피스, 침목(크로스타 이), 계목판, 좌철, 좌 철쐐기, 저판(베이스플 레이트), 궤조클립, 노 반, 격재 및 궤조의 접 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 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 다]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7304, 7305 및 7306	철강제(주철제를 제외 한다)의 관과 중공프로 파일	제7206, 7207, 7218호 또 는 제7224호의 재료로부 터의 생산
7307.21 부터 7307.29까지	스테인리스 강의 관 또 는 연결구류	단조 반가공품의 터닝, 드 릴링, 리밍, 나선가공, 데 버링 및 모래 분사 다만, 사용된 벼린 반가공 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 (4)
7308	철강의 구조물(제9406 호의 조립식 건물은 제 외한다) 및 구조물 부분 품(예: 다리와 교량, 수 문, 탑, 격자주, 지붕, 지 붕 틀, 문과 창 및 이들 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 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조각,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301호의 용접된 형재는 사용될 수 없음.	
7315.20	스키드 체인	사용된 제 7315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ex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403.21, 7403.22 및 7403.29	동 합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함.	
7408	동의 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7409	동의 판, 쉬트 및 스트 립(두께가 0.15밀리미 터 초과하는 것만 해당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 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 료 뒷면을 붙인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하여,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 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7411	동제의 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다 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601	알루미늄의 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또는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 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 랩의 열 또는 전해처리에 의한 생산

(1)	(2)	(3) 또는 (4)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 파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7605	알루미늄의 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7606	알루미늄 판,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 미터 초과하는 것만 해 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7607	알루미늄 박 [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 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 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 께는 제외한다)가 0.2밀 리미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와 제7606호의 재료로부 터의 생산은 제외
7608	알루미늄 튜브 및 파이 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4)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 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7616. 99	알루미늄제의 기타제 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77 류	HS에서 미래의 사용에 대비하여 확보되었음.		
ex 제 78 류	연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801	연의 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802호의 웨이 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수 없음.	
ex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7901	아연의 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7902호의 웨이스트나 스 크랩은 사용될 수 없음.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8206	제8202호부터 제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그러 나, 제8202호부터 제8205 호까지의 도구의 총가치 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 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구는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8207.13부터 8207.30까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 구,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프레싱, 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 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8207.40부터 8207.90까지	탭핑 또는 드레딩용 공 구, 드릴링(착암용 제 외)용 공구, 보링 또는 브로칭용 공구, 밀링용 공구, 터닝용 공구, 기 타호환성공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8211.10 부터 8211.93까지 및 8211.95	칼 (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 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조발기, 정육점 또는 주 방용 칼붙이, 초퍼 및 민성용 칼, 종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 금속의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1)	(2)	(3) 또는	= (4)
8215	스푼, 포크, 국자 , 스키 머, 케이크서버, 생선 용 칼, 버터용 칼, 각설 탕 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비 금속의 손잡이는 이용될 수 있음.	
ex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8302. 41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 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8302. 60	자동 도어 폐지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8306. 21 부터 8306. 29까지	비금속제의 작은 조상 및 기타 장식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8306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ex 제 84 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 류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 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 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404	제8402 또는 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증 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 톤식 내연기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 울은 제외하며, 중량측 정식의 계수기와 검사 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의 저울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5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스킵호이스트는 제외 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6	선박의 데릭 및 크레인 (케이블 크레인을 포함 한다);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 레인이 결합된 작업트 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7	포크리프트 트럭, 기타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8	기타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 에 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릭)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429	자주식의 불도저, 앵글 도저, 그레이더, 레벨 러, 스크레이퍼, 메카니 컬셔블, 엑스커베이터, 셔블로더,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0	기타의 이동, 정지, 지 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 는 천공용의 기계(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 에만 해당한다), 항타기 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 우와 스노블라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2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 준비 또는 경작용의 것만 해당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 계, 조란, 과실 또는 기 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 의 기계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 께 조합되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 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444	인조섬유의 방사, 연신, 텍스처 도는 절단용의 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합사기, 연사기와 기타 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 사기(위권기를 포함한 다)와 제8446호 또는 제 8447호의 기계에 사용 되는 방직사를 제조하 는 기계와 준비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6	직기(직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47	편물 기계, 스티치 본 딩 짐프사, 튤, 레이스, 자수, 트리밍, 꼰끈 또 는 네트 생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6	각종재료의 가공공작 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 빔, 이온빔 또는 플라즈 마아크 방식으로 재료 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 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7	금속 가공용의 머시닝 센터, 유닛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만 해당한다) 및 멀티 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58	머신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 반(터닝센터를 포함한 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해드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보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태평용으로 사용되는 것[제 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0	디버링, 샤프닝, 그라인 딩, 호닝, 래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 이나 서메트를 가공하 는 것 (제8461호의 기어 절삭기, 기어연삭기 또 는 기어 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1	플레이닝용, 쉐이핑용, 슬로팅용, 부로칭용, 기 어절삭용, 기어연삭용, 기어완성가공용, 톱질 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 공하는 기타의 공작기 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2	단조, 해머링, 다이스템 핑용의 금속가공기계 (프레스를 포함한다)굽 힘, 접음, 교정, 펼침, 전 단, 편칭, 낫칭용의 금 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 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 는 금속탄화물 가공용 의 프레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3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 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 식의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4	석,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 기계와 유리의 냉 간가공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465	목재, 코르크, 뼈, 경질 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 는 이와 유사한 경질 물 의 가공기계(네일용, 스 테이플용, 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6	제8456호부터 제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분품 및 부속품(가공물 홀더, 툴홀더, 자동개폐 식 다이헤드,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 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 되는 각종의 툴홀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7	수지식 공구(압축 공기 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 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 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9	타자기(제8443호의 프 린터는 제외한다)와 워 드프로세싱 기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 자수첩, 회계기, 우편요 금계기, 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 호형태로 전사하는 기 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 리기계(다른 곳에 열거 되지 아니하거나 포함 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474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 형업기,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 페이스트, 굳지 아니한 시멘트, 석고, 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사형의성형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 형베이스, 주형제조용 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 은 제외한다), 금속 탄 화물, 유리, 광물성물질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 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 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예:정류기)와 유도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척, 크 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 공물홀더, 전자석 커플 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 헤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8	진공청소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 기를 자장한 것만 해당 하며, 제8508호의 진공 청소기는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511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의 점 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 기기, 내연 기관에 부속 되는 발전기와 개폐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2	전기식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윈드스크린와이퍼,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과 자동차용의 것만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을 포함한다)및기타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기 가열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5	전기식 (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식 및 광자빔식, 초음파 식, 전자빔식, 자기 펼 스식 또는 플라즈마 아 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 용의 기기(절단 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 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 기식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 입식가열기, 난방기기 와 토양가열기, 전기가 열식의 미용기기, 손 건 조기, 전기 다리미, 기 타 가정용 전열 기기 및 전열용 저항제.(단, 제 8545호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 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1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비디오 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3	디스크, 테이프,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 스마트 카드와 음 성 및 기타 현상의 기록 용 매체(기록 여부를 불 문하고, 디스크의 제조 용의 메트릭과 마스터 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 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5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 레비전용 송신 기기(수 신기기나 음성 기록 또 는 재생기기를 갖춘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 오카메라 레코더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6	레이더기기, 항행용 무 선기기와 무선 원격조 절기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7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 기(음성 기록 또는 재생 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 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28	텔레비전 수신 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 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 전 수신용의 기기(라디 오방송용 수신기기, 음 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 록 또는 재생 기기를 결 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529	부분품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 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 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0	철도, 궤도, 도로, 내륙 수로, 주차장, 항만 또 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 호, 안전 또는 교통관제 기기 (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 각신호용기기 (예: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 경보기 또는 화재경보 기). 다만, 제8512호와 제8530호의 것은 제외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퓨즈, 서지억제기,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와 광섬유, 광섬유다발또는 케이블 용의 커넥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8	부분품(제8535호, 제 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 전램프(실드빔 램프 유 닛과 자외선 또는 적외 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 는 광전관 벨브와 튜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8542. 31 부터 8542.33까지 및 8542. 39	모노리식 집적 회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또는, 알맞은 도펀트의 선택적 인 주입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에 집적회로를 형성 하는 확산공정(비당사국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 을 포함한다)전선, 케이 블(동축케이블을 포함 한다)과 기타의 전기절 연도체(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광섬 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 만 해당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 부를 불문한다)	에서의 조립 및/또는 테 스트 여부 불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5	탄소전국, 탄소브러쉬, 램프용 탄소, 전지용 탄 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 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 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 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호의 전기절연체 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 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 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 에 열거되지 아니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 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ex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 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 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 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 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 통신호용 기기.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 는 철도용 기관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8603. 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및 화차 (제8604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8608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 장, 항만,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 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 안전, 교통관제용 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 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8701부터 8707까지 및 8712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차체 및 제8701호 에서 제8705호까지의 차량을 위한 엔진을 갖 춘 섀시, 자전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08부터 8711까지 및 8713부터 8716까지	제8701호부터 제8705호 까지 및 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모터 싸이클, 작업차 및 이들 의 부분품, 캐리지, 유 모차와 그 부분품, 트레 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및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ex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 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8804. 00	로토슈트	제8804호의 그 밖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 사한 장치, 지상비행훈 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 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8906호의 선체 는 사용될 수 없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0 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 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01	광섬유, 광섬유다발, 제 8544호의 것 외의 광섬 유 케이블. 편광재료제 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텍트 렌즈를 포 함한다) 프리즘, 반사경 과 기타의 광학용품으 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 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 학용품은 제외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 프 리즘, 반사경과 기타 광 학용품(장착된 것으로 기기의 부분품 또는 기 기에 부착하여 사용하 는 것만 해당하며, 광학 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 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12	광학현미경외의 현미 경과 회절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레이저 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 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902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 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 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 용하는 기기(내과용, 외 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 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 기, 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 고압발 생기, 조절반, 스크린,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 이블, 의자와 이와 유사 한 물품을 포함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27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 점도, 프로서티팽 창, 표면 장력 등의 측 정 도는 검사용의 기기 와 열, 소리,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기 (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9030	오실로스코우프, 스펙 트럼 분석기와 기타 전 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 사용의 기기(제9028호 의 것은 제외한다) 및 알파선, 베타선, 감마 선, 엑스선, 우주선 또 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 용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 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만 해당한다)와 윤곽투 영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 제어용의 기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다음 을 제외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05	기타의 클록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초과하지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u> </u>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사용된 모 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 트(미조립 또는 부분적 으로 조립된 것만 해당 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 먼트 (조립된 것만 해당 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위의 제한 내에서, 사용된 제9114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해야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 와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 스, 이들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 (4)
9113	휴대용시계줄, 휴대용 시계밴드 및 휴대용시 계팔찌와 이들의 부분 품		
ex 9113 .10 및 9113. 20	귀금속을 입힌 금속 또 는 비(卑)금속제 (금 또 는 은을 도금 여부를 불 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기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 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3 류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4 류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쿠션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 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 임플레이트와 이와 유 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 축물.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 생산

(1)	(2)	(3) 또는	(4)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406	조립식 건축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5 류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 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ex 9503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 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9506.31 吳 9506 .39	골프채와 기타 골프 용 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 기 위한 거칠게 성형한 블 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 음.	
ex 제 96 류	잡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1)	(2)	(3) 또는	(4)
9601 및 9602	가공한 아이보리, 뼈, 귀갑, 뿔, 사슴뿔, 산호, 자개와 기타 동물성 조 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을 포함한다)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 물성 조각용 재료 및 고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 품(왁스, 스테아린, 편 연수지 또는 모델링 페 이스트제의 것만 해당 한다)다른 곳에 열거되 지 아니하거나 포함되 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 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 한 비경화젤라틴 제외 한다), 비경화젤라틴 재 료의 제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9603	비, 브러쉬(마당비와 그 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다람쥐 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 동식의 것에 한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 러, 스퀴지 및 모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화 장용, 바느질용,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 에 한한다)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 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에 적용될 규정을 충족해 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이 세트의 공장도 가 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 은 결합될 수 있음.	
9606	단추, 프레스파스너, 스 냅파스너와 프레스스 터드, 단추의 몰드와 이 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 랭크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1)	(2)	(3) 또는	÷ (4)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 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스틸로그래프 펜과 기 타의 펜, 철필, 프로펠 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 펜슬홀더, 유사 한 홀더 및 이들의 부분 품 (캡과 크립을 포함 하여 제9609호는 제외 한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 의 펜촉 또는 펜촉 포인트 는 사용 될 수 있음.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 와 유사한 리본 (잉크가 침투되어있거나 인쇄 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 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 리지상의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9613. 20	포켓형 라이터 (가스 주 입식의 것으로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 다)	사용된 제9613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ex 9614	끽연용 파이프와 파이 프 볼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으로부터의 생산	
제 97 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 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공통규정

- 1. 아래 기술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 부속서 2에 명시된 규정 대신, 연간 쿼터에 의해 제한을 받을지라도, 다음의 규정이 또한 적용될 수 있다.
- 2. 이 부속서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영어 문구를 포함한다: "예외물량 의정서의 부속서 2-가...".
- 3. 해당 제품이 예외물량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수출 자가 서명한 신고서의 규정에 따른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수 있다.
- 4. 원산지 증명이 어묵 조제품(제1604.20호의 일부)에 대한 예외물량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묵 조제품이 그 제품의 중량 당 최소 40퍼센트의 어류로 구성되고,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연육의 주요 원료64)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된다.
- 5. 원산지 증명이 염색된 직물(제5408.22호 및 제5408.32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그 원산지 증명은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
- 6. 이 부속서에 언급된 모든 물량은 유럽연합 당사자에서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⁶⁴⁾ 필요시, 주요원료의 개념은 이 의정서의 제28조에 따라 관세위원회에 의하여 해석된다.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7. 아래 표에 적시된 쿼터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출된 물량은 유럽연합 당사자로의 수입을 근거로 산정될 것이다.

HS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연간 수출쿼터
(1)	(2)	(3)	(4)
ex 1604.20	제품의 증량 당 최소한 40퍼센트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65)	제3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이행 1년차 연간 쿼터: 2,000 메트릭톤 이행 2년차 연간 쿼터: 2,500 메트릭톤 이행 3년차 및 그 이후 연간 쿼터: 3,500 메트릭톤
ex 1905.90	비스켓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연간 270 메트릭톤의 쿼터
2402.20	궐련(담배를 포함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연간 250 메트릭톤의 쿼터
5204	면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86 메트릭톤의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310 메트릭톤의 쿼터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85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377 메트릭톤의 쿼터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92 메트릭톤의 쿼터

⁶⁵⁾ 특히 공통규정 제4항 참조

5408	인조 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 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연간 17,805,290 SME의 쿼터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86 메트릭톤의 쿼터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 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3,437 메트릭톤의 쿼터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 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1,718 메트릭톤의 쿼터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 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연간 203 메트릭톤의 쿼터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²⁾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불가리아어 본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N_0 $\cdots^{(1)}$)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ъдето ясн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cdots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스페인어 본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 ...⁽¹⁾)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²⁾.

체코어 본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

⁽¹⁾)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²⁾.

덴마크어 본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¹⁾),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²⁾.

독일어 본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¹⁾)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²⁾ Ursprungswaren sind.

에스토니아어 본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¹⁾)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²⁾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그리스어 본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αριθ. ...⁽¹⁾)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 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σιακής καταγωγής ...⁽²⁾.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

프랑스어 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¹⁾)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²⁾.

이탈리아어 본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¹⁾)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²⁾.

라트비아어 본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cdots^{(1)}$), deklarē, ka, izņ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 $\cdots^{(2)}$.

리투아니아어 본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ės

liudijimo Nr. ...⁽¹⁾)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²⁾ preferencinės kilmės prekės.

헝가리어 본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¹⁾)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a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²⁾ származásúak.

몰타어 본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¹⁾)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ġini preferenzjali ...⁽²⁾.

네덜란드어 본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¹⁾),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²⁾.

폴라드어 본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¹⁾)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²⁾ preferencyjne pochodzenie.

포르투갈어 본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 (1)),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 (2).

루마니아어 본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b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ția vamală nr. $\cdots^{(1)}$) declară că,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țială $\cdots^{(2)}$.

슬로베니아어 본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dots^{(1)}$)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dots^{(2)}$ poreklo.

슬로바키아어 본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cdots^{(1)}$)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cdots^{(2)}$.

핀란드어 본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¹⁾)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tuotteita ⁽²⁾.

스웨덴어 본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¹⁾)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²⁾.

	(:	3
((장소 및 일자)	
	(-	4
••••••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¹⁾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²⁾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³⁾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⁴⁾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2.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 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 선언

- 1. HS의 제25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당사자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 선언

- 1. 산마리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당사자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 선언

-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생산 공정, 가격 변동 및 그 밖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2

는 HS의 정기적인 개정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주 해

- 1. 제1조의 목적상, 생산은 수확, 덫사냥, 생산, 번식 및 분해를 포함한다.
- 2. 제1조사호의 목적상, 확인 가능한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 을 말한다.
- 3. 제5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포함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 를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 4.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과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한다.
- 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 6. 제10조의 목적상,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에너지 및 연료
 - 나. 설비 및 장비
 - 다. 기계 및 도구, 그리고
 - 라.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 니하는 상품
- 7. 제11조의 목적상,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제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 8. 제11조의 목적상, 특정한 "기간"이란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 후 제시되었을 경우
 -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10. 안도라공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안도라공국의 관세당국은 안도라공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
- 11.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이탈리아공화국의 관세 당국은 산마리노공화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